



보도	2024.9.26.(목) 조간	배포	2024.9.25.(수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 증권거래감독팀	책임자	팀 장	박재영	(02-3145-7590)
		담당자	수석조사역	오수영	(02-3145-7593)

**투자자에게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,  
투자자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 
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.**

### < 주요 내용 >

- ◆ 금융감독원은 공정·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, 「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고, 「투자자별 맞춤형 지원 체계」를 가동합니다.
- 먼저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개함으로써,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·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####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구 분	판단 원칙
차입	공매도 주문 전 차입계약의 구체적 계약조건이 확정될 필요
대여	주문 전 반환요청 또는 주문일 내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반환 확정
담보제공	주문 전 인도청구 또는 주문 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반환 확정

- 또한,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T/F를 유관기관 합동 T/F로 확대 개편(9.9.)하고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(101사)별로 담당 RM\* 지정 및 1: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'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'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

\* Relationship Manager

# I . 추진 배경 및 방향

- (배경) 외국인투자자들 중심으로 무차입공매도의 자체 예방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 제공 요청\*
    - \* '24.5.16.~17. 기간 중 실시된 글로벌 IB 등 대상 홍콩 현지 간담회 등에서 제기
  - (규제 명확성) 금융당국이 해석, 적용하는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 명문화 등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 필요
  - (실무 적용성) 공매도는 주식 차입·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래 사례별 구체적 실무예시를 제시할 필요
  - (외국인 이해가능성) 금융당국이 국문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정확하게 금융당국의 지침을 이해하기 곤란
- (개선방향) 투자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공매도 불법 여부를 검증,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'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' 마련

## 통합 가이드라인

◆ 투자자들이 요구한 '사례 중심의 명확화된 공매도 해석 지침'을 국문뿐만 아니라 '영문'으로도 제공

구 분	개선방안
① 규제 명확성	- 공매도 수반 다양한 거래별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 제공 - 투자자 질문에 답변하는 Q&A방식을 채택
② 실무 적용성	- 증선위 등에서 의결된 주요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사례 중심화
③ 외국인 이해가능성	- 국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시점(10월중)에 맞춰 영문 가이드라인 제공

◆ 통합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무차입공매도 자체 시정과 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고도화시켜 무차입공매도 근절에 기여

## II.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① (매도가능잔고 산정)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(예시: 대여주식 반환요청) 등 잔고 증감\*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산정

\* 당일 시작 잔고 + 회수 가능 수량 + 당일 매매 수량 + 권리 수량 + 대차잔고 변동

② (대여증권 소유 인정)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 (T+2일)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

-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①매도주문 전 또는 ②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\*하여 결제일까지 반환(결제일 이전에 대여증권을 인도할 의무가 차입자에게 발생)될 수 있는 경우

\* 단, 하루 중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인도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매도주문일 중 적시(예: 오전 12시 이전)에 중도상환 요청을 완료할 필요

### 위반사례

- ① A사는 B사에 주식 X를 대여
- ② A사는 T일에 대여 중인 주식 X를 전량 매도주문하고 T+1일 B사에 반환요청(리콜)
- ⇒ B사는 표준결제주기(2영업일) 이후인 T+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므로(결제일 (T+2일) 이후 반환 가능성 존재) A사가 매도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

③ (담보증권 소유 인정)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(T+2일)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

-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①매도주문 전 또는 ②주문 후 담보 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하여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

### 위반사례

- ① B사는 A사에 주식 X를 대여하고 A사는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B사에 주식 Y를 대여
- ② A사는 T일 주식 Y를 전량 매도주문하고, T+2일에 B사에 반환요청
- ⇒ B사는 A사에 표준결제주기 이후인 T+4일까지 주식 Y를 반환하면 되므로 A사가 매도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

④ (차입증권 소유 인정)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\*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차입증권의 소유 인정

\* 차입종목, 수량, 수수료율, 결제일

⑤ (독립거래단위간 거래)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·관리하고,

-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,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실시

⑥ (증권의 사전입고 기준) '입고'란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

※ 증권이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므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, NSDS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 면제

#### 사례

(집합투자기구)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 체결 후 수탁사가 거래를 '승인'하고, 예탁결제원이 승인을 확인한 뒤 계좌대체 방식으로 수탁사 계좌로 증권 입고 및 시스템상 '인도' 상태로 전환한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공매도 주문

⑦ (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)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(주문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),

-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

#### 사례

(증권사) 공매도 관리부서와 공매도 점검부서(컴플라이언스, 감사 부서 등)가 각각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, 「점검 체크리스트」의 위탁자 확인란은 관리부서 임원, 수탁자 확인란은 점검부서 임원이 서명

◆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·업데이트될 예정이며,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 예정(10월)

### Ⅲ. 투자자별 맞춤형 지원체계 가동

□ (공매도 전산화 T/F 확대) 기존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T/F ('23.12.6. 발족)를 '24.9.9.부터 유관기관\* 합동 T/F로 확대

\* [참여 유관기관]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협회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증권금융

- 합동 T/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(RM: Relationship Manager)를 지정하고
-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\* 제공 예정

\* 9월말부터 순차적으로 투자자별 실무협의를 실시

구 분		법인 수	T/F 담당자 연락처
글로벌 IB	북미·호주계	10	02-3145-6896
	유럽·아시아(호주 외)계	11	02-3145-6893
증권사	종합금융투자사업자	9	02-3145-6894
	이 외	21	02-3145-6895
운용사	공모 운용사	15	02-3145-6897
	사모 운용사	33	02-3145-6892
기타사	기타 금융기관, 일반법인	2	02-3145-6894

□ (설명회 개최)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

-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하고
-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

구 분	진행 실적(5~8월)	진행 계획(9~12월)
수탁 증권사(55사)	3회(6.25., 7.2., 7.3.)	각 그룹별 월 1회* 진행 예정 *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그룹별 횟수 조정
시스템 구축대상(101사)		
공모운용사(15사)	2회(7.11., 7.16.)	
사모운용사(33사)	2회(7.24., 7.30.)	
증권사 등(32사)	2회(8.8., 8.9.)	
외국인(21사)	2회(5.24., 5.31.)	
일반사무관리회사(8사)	2회(8.14., 8.20.)	
내부통제 대상	1회(8.29.)	

※ <별첨>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